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의안번호
373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6. 15.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731

I.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6. 05. 26.

다. 회부일자 : 2026. 05. 27.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써,

나.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컨설팅 서비스, 인식개선 교육 등 권리증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 재계약으로 운영하였으며,

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 위탁기간 : 2026.09.01 ~ 2029.08.31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419,840천원('26년 예산 기준)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 공개모집)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 그중 성인 대상 의사소통 지원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
 - 전문적 지식과 기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등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위 치	규모	인력	위탁기간	운영주체
서울시장장애인의사 소통권리증진센터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문래SKVI센터 1620호	798m ²	5명	'23.9.1~ '26.8.31	(사)한국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조건이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협약 기간이 ‘26년 8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범위 : 사무형 사무위탁
- 위탁기간 : ‘26. 9. 1. ~ ‘29. 8. 31.
-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 진센터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문래 SKVI센터 1620호	(사)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2020.09.01.~2026.8.31. (재계약 1회)	419,840천원 (26년도)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관련 주요현황

- 서울시는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였으며,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의사소통장애인”으로 정의함.
- 서울시는 동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개소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장애인의 출근, 학업 등 사회생활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항임.²⁾
- ‘25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176,872명³⁾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44.9%로 추산하고 있음.

2) 헬스조선, 「장애인을 사회로 이끌려면 ‘의사소통’부터 원활하도록 지원을」, 2024.10.18.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101802413. 2026.5.30. 검색

3) 전체 장애인 가운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형인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수입. (‘25.년`12월말 기준)

나.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해당 사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의 개발과 보급, 이용자별 의사소통 지원, 관련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이 요구되는 사무임.
 -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생활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시스템 역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기구 선정, 의사소통방식 설계, 사용훈련 및 사후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 따라서 해당 사무는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인력 및 축적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

-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는 2020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재계약 1회)

①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주요 결과

- 해당 사무는 2026년 3월 실시한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에서는 89.91점을 획득하였으며, 종합점수와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민간위탁종합평가 점수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공통 사무	1. 사업인프라	1-1. 조직 및 인력 운영		-	3.30
		1-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00	2.00	1.70
		1-1-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00	1.60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	6.78
		1-2-1-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정성)	8.00	3.00	2.25
		1-2-1-2.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정량)		2.00	1.98
		1-2-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00	2.55
		1-3. 사회적 가치 기여		-	4.23
		1-3-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00	1.00	0.80
		1-3-2. 육아친화 조직문화 유지·개선 노력		2.00	1.68
		1-3-3-1. ESG 경영 및 친환경·탄소중립 노력(정성)		1.00	0.75
		1-3-3-2. ESG 경영 및 친환경·탄소중립 노력(정량)		1.00	1.00
	2. 사업활동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	2.96
		2-1-1. 사업계획의 적정성	3.50	2.00	1.68
		2-1-2. 자체점검 및 규정 준수		1.50	1.28
		2-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	4.74
		2-2-1.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5.50	3.00	2.61
		2-2-2.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2.13
개별 사무	3. 사업성과	3-1.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시스템 개발·보급		-	11.76
		3-1-1. 의사소통 상징 개발	12.60	2.80	2.80
		3-1-2. 채팅 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티톡 개발		2.80	2.80
		3-1-3. VSD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티샷 개발		2.80	2.80
		3-1-4.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목표 적절성		4.20	3.36
		3-2.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	7.70
		3-2-1.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	8.40	5.60	5.60
		3-2-2.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목표 적절성		2.80	2.10
		3-3. 의사소통 환경구축		-	19.60
		3-3-1.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	21.00	2.80	2.80
		3-3-2. 기관맞춤형 의사소통 컨설팅		5.60	5.60
		3-3-3.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 개발배포		5.60	5.60
		3-3-4.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목표 적절성		7.00	5.60
		3-4. 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	3.00	3.00	2.55
		3-5. 민간위탁 창의혁신 노력	3.00	3.00	2.40
	4. 지도점검 이행노력	4-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6.00	1.00	1.00
		4-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4.00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사용자 만족도	5. 만족도 제고노력	5. 시민만족도 평가결과(합계)	20.00	-	18.89
		5-1. 시민 만족도 조사		10.00	9.76
		5-2. 청렴 체감도 조사		5.00	4.73
		5-3.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4.40
6. 감점사례		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0.00
		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0.00
		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2.00	-2.00	0.00
		4.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0.00
		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0.00
		6.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미이수	-2.00	-2.00	0.00
		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2.00	-2.00	0.00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0.00
	9. 감사 지적사항 발견	징계, 문책, 시정	-2.00	-2.00	0.00
		주의(경고, 훈계)	-1.00	-1.00	0.00
		개선요구, 고발·수사요청	-0.50	-0.50	0.00
		권고, 통보, 현지조치	-0.10	-0.10	0.00
합계			100.00	-	89.91

<표> 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주요결과

구분	내용
우수사항	· 전국 유일의 의사소통 권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실적보고서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 서면평가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 네트워크 운영이 우수함 · 소규모 인력 구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분야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예산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재정 운영의 적정성이 우수함
개선요청사항	· 사회적 기여 활동 추진 시 장애인 당사자 모임 및 교육 등과 연계한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직 중 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승진·승급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우수한 사업성과 대비 대외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언론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 추진이 필요함 · 쉬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대상 홍보 확대가 필요함

구분	내용
	· 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핵심사업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조치결과	· 사회적 기여 활동 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 운영 및 사업 전반에 사회적 기여활동 요소를 반영하고, 당사자 참여 기반 프로그램 및 교육과 연계한 실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재직자의 학위 취득 등 전문성 향상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보수체계상 승진·승급의 제한을 고려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보도, 온라인 콘텐츠,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확대하고, 특히 쉬운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중장기 운영전략을 재정비하여 핵심사업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 사업활성화 부분에서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유기적 및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맞춤형 정책 및 사업추진, 사법 절차 내 정보접근성 향상,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등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기여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음.
- 동시에 정책 기획부터 연구, 콘텐츠 및 도구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적 운영 구조를 확립하였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도구 개발시 민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구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업성과 부분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기기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상황과 맥락에 맞춘 맞춤형 의사소통 상징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
- 생동감 있는 표현이 필요한 어휘는 GIF 기반 상징으로 제작하고, 연차별로 개발 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제 사용자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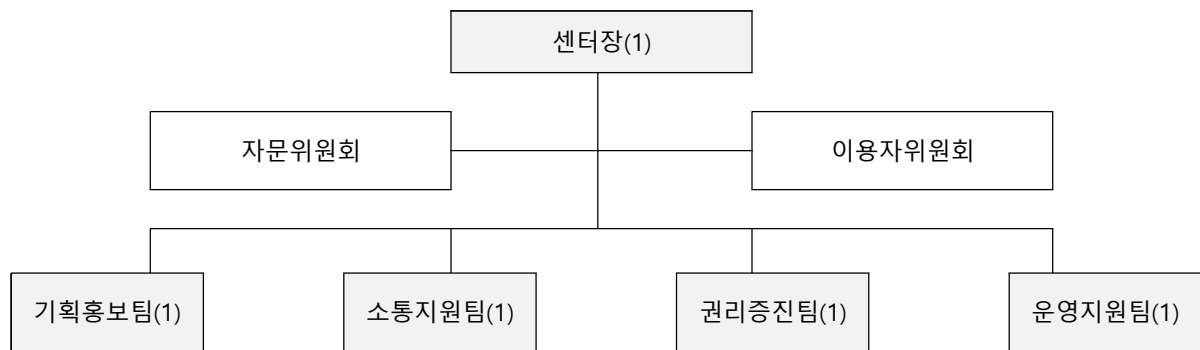
현력을 극대화한 점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이며,

-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원인력 등 대화 상대방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 과정을 설계해 운영하며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했다는 평가가 있음.
- 그러나, 예산이 특정시기(4분기)에 집중 집행되는 경향, 인건비 증가 대비 사업운영 축소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선요청사항이 있었으며, 성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선요청사항이 제시됨.
- 또한, 개선요청사항 가운데에는 조직규모의 한계로 인한 승진 및 보수개선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음.

② 센터 주요사업 및 전문인력 현황

- 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으로, AAC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말 이외의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함.
- AAC는 전자식, 비전자식 도구 등 개인별 장애 특성,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해, 해당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함.

- 현재 센터에서는 채팅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앱 ‘커뮤니톡’, 시각 장면 기반(VSD) 의사소통앱 ‘커뮤니샷’ 등 AAC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센터는 소규모 조직(총 5명)으로 전 구성원이 팀장급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조직도

- 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기획홍보, 소통지원, 권리증진, 운영지원의 4개 기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와 이용자위원회를 통해 전문적 자문과 이용자의견을 반영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구성인력의 자격기준 및 주요업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자격기준(안) 및 주요업무

직위/직급 (인원)	주요업무	자격기준
센터장 (1)	○ 센터 운영 및 사업 총괄	○ 언어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관련학과 석사이상 ○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자격 중 1개 자격 ○ 의사소통 지원 전문 경력 15년 이상
기획 홍보 팀장	○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 검토 및 각 팀 업무 지원 ○ 자문위원회, 이용자간담회 운영 및 상·하반기 모니터링 ○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 언어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이상 ○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자격 중 1개 자격

직위 /직급 (인원)	주요업무	자격기준
(1)	정보플랫폼 운영 ◦ 의사소통 환경 구축 - 서포터 양성 교육 운영 ◦ 서울시, 전국 지자체, 공단, 기업 등 대외협력	◦ 의사소통 지원 전문 경력 5년 이상
소통 지원 팀장 (1)	◦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 의사소통 환경 구축 - 기관맞춤형 컨설팅 운영 ◦ AAC 시스템 개발·보급 - 커뮤니상징	◦ 언어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이상 ◦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자격 중 1개 자격 ◦ 의사소통 지원 전문 경력 3년 이상
권리 증진 팀장 (1)	◦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운영 ◦ 의사소통 환경 구축 - 커뮤니모임 운영, 매뉴얼 제작 ◦ AAC 시스템 개발·보급 - 커뮤니톡, 커뮤니샷, 커뮤니판	◦ 언어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이상 ◦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자격 중 1개 자격 ◦ 의사소통 지원 전문 경력 3년 이상
운영 지원 팀장 (1)	◦ 행정 및 운영 지원 - 문서·인사·시설 관리 ◦ 예산 및 회계, 안전 관리 등 ◦ 자원 관리 : 자원봉사자, 물품 및 자원 관리 등 ◦ 센터, 사업 주간 업무 보고 및 일정 운영·관리	◦ 언어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교육 관련학과 학사이상 ◦ 회계, 인사, 노무 등 운영지원 경력 3년 이상

- 그러나 전문인력 채용에 비해 조직규모의 한계로 인한 승진 및 보수 개선의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이직현상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임.
- 그 외에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필요, 적극적인 홍보전략 추진 필요성 등을 지적받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23년 3명, 24년 1명, 25년 계약직 직원 1명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발생

③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무는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유형이 뇌병변장애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유형(자폐, 청각 등)의 장애인을 고려한 사업안 마련과 사업 대상 영역에 대한 고민 등 운영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장애유형별 표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보완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조직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적정(조건이행)’으로 수정하여 통보하였음.
- 의사소통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사업수행 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운 분야인 점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운영위원회 평가결과가 ‘적정’이 아닌 ‘적정(조건이행)’으로 통보된 만큼 추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 등의 과정에서 개선 요구사항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에 대해 집행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3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재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특히,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기관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완의사소통(AAC)서비스는 말이나 글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표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유형과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의사소통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및 이용자 맞춤형 지원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과정 등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향후 센터의 사업이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향후 운영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과 관리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센터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정책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